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입주자 일자리·상담 등 지원 근거 법률 상향》

■ 이연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612호)

2025.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이 연 회 의 원 대 표 발 의 (제 2205612 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입주자 일자리·상담 등 지원 근거 법률 상향 (안 제3조제2항제2호)	2

I. 이연회의원 대표발의(제2205612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연회의원 등 20인

나. 발 의 일 : 2024. 11. 15.

다. 회 부 일 : 2024. 11. 1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에는 입주자 고용 관련 프로그램, 상담·교육·지원 또는 보호가 필요한 입주자 대상 프로그램 등에 대한 개발 및 재정지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해당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주자 고용 관련 프로그램, 상담·교육·지원 또는 보호가 필요한 입주자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및 재정지원 내용을 기본계획 작성내용으로서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프로그램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2호).

3. 검토의견

가. 입주자 일자리·상담 등 지원 근거 법률 상향(안 제3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3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생략)	제3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u>	2. <u>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u> ----- -----
<u><신 설></u>	<u>가.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u>
<u><신 설></u>	<u>나. 입주자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u>
<u><신 설></u>	<u>다. 입주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및 직업교육훈련을 포함한다)</u>
<u><신 설></u>	<u>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정신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등 상담·교육·지원이 필요한 입주자를 위한 프로그램</u>
<u><신 설></u>	<u>마.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자를 위한 돌봄서비스</u>
<u><신 설></u>	<u>바. 그 밖에 입주자를 위하여 필</u>

현행	개정안
3. ~ 6. (생략) ③ ~ ⑤ (생략)	<u>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3.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개정안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¹⁾에 포함하도록 하위법령(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3조제2항²⁾은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열거(제1호부터 제5호까지)하고, 그 밖에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제6호)하고 있음.

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5.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에 대하여 현행법 시행령 제3조제2항3)은 사회적 일자리 개발 사업, 입주자의 고용촉진 사업, 정신장애인·알코올중독자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 독거노인·장애인·아동 돌봄 서비스 사업 등을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1] 현행법령과 개정안 비교

구 분	현 행	개정안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법률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	대통령령	
쾌적한 단지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입주자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입주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대통령령	법률
정신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등 상담·교육·지원이 필요한 입주자를 위한 프로그램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자를 위한 돌봄서비스		
그 밖에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료: 현행법령 및 개정안 조문 내용 정리

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③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말한다.

1.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
2. 쾌적한 단지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3.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입주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개발 사업
5. 입주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사업
6.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
7.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자를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안은 현행법 시행령에서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가운데 입주자 고용 관련 프로그램 및 상담·교육·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사업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법률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내용을 더욱 명확히 하는 타당한 입법으로 생각됨.

정부는 현재 주택도시보증기금 주택계정의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및 서비스 개선(1440-412)’ 사업의 ‘주거복지사배치’⁴⁾ 내역사업을 통해 개정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입주자 일자리·상담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에 동의하는 입장이며, 안 제3조제2항제2호바목⁵⁾의 위임규정은 현행법 제3조제2항제6호⁶⁾의 위임규정과 중복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음.

4) 2019년부터 LH가 해당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고, 2023년부터 국비 지원이 이루어짐(2025회계연도 주택도시보증기금 기금운용계획안 58억 4,700만원).

5) 안 제3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개발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가. ~ 마. (생략)

바. 그 밖에 입주자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6. 그 밖에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문 의 처
02)6788-5574